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 Gangseo-gu, Busan, 618-814 Republic of Korea

Phone:+82-70-8799-8501 Fax:+82-70-8799-8419 E-mail:jsupark@krs.co.kr Person in charge: Park Jae-sung

No: 2020-3-E Date: 2020.5.13

To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제 목(Subject)	9.133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
	(규칙 1편 및 9편)
적 용(Application)	2020년 6월 1일 (검사신청일 기준)

1.2020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9편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1) COVID-19 와 같은 Pandemic 과 관련하여 "불가항력" 요건 개정(1 편) 및 신설(9 편)
- 2. 아울러,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1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9편에 각각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: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9편 개정사항 --- 1부.(끝)

KR Page 1/1 (K)

(서식번호: FI-03-03) (20.06.2018)

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(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)

May 2020.



## - 주 요 개 정 내용 -

- 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  - ◉ Coronavirus Disease(COVID-19)와 같은 Pandemic관련 불가항력 요건 개정

# 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#### 혖 핹

### 제 1 장 선급등록

#### 제 1 절 ~ 제 8 절 〈생략〉

#### 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

#### 901. 선급정지 및 회복

- 1. ~ 5. 〈생략〉
- 6.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필요 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. 【지침 참조】
- (1) 선박기록의 검토
- (2)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 에 대한 검사 (2020)
- (3)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 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(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)

#### 〈새롭게 추가〉

#### 개 정 사 항

#### 제 1 장 선급등록

제 1 절 ~ 제 2 절 (현행과 동일)

제 9 절 선급정지, 탈급 및 재등록

#### 901. 선급정지 및 회복

- 1. ~ 5. 〈현행과 동일〉

6. 불가항력(force majeure) (2020)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 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합 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. 【지침 참조】

- (1) 선박기록의 검토
- (2)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 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(2020)
- (3)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(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 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Pandemic(예, COVID-19)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기한까지 선급유지상태를 허용할 수 있다. (2020)

- (1) 기국의 승인(해당되는 경우)
- (2) 선박기록의 검토
- (3) 검사원이 정당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/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
- (4) 선박의 합의된 연기 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선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선박소유자가 제출 한 증거에 대한 검토(여기서, 우리 선급은 워격검사나 수용 가능한 사진, 비디오 또는기타 구조물/장비 상 태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)
- (5) 선박이 합의된 기간 동안 우리 선급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,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는 선장의 진술서

현 행	개 정 사 항		
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 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.	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.		
여기서 '불가항력(force majeure)'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;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;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 적인 장기간의 악천후,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; 전쟁;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을 말한다.	여기서 '불가항력(force majeure)'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;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;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,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; 전쟁;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(예, COVID-19와 같은 Pandemic)을 말한다. (2020)		

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(제 9편 추가설비)

(2장)

2020. 05.



## - 주 요 개 정 내 용 -

- 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  - COVID-19 Pandemic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신설

현 행	
제 1장 〈생략〉	
제 2 장 하역설비	
제 1 절 〈생략〉	
제 2 절 검사	
201. 〈생략〉	20
202. 하역설비의 검사	20
1. 〈생략〉	1
2. 검사시기	2
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	

- 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
- 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
- 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
- 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하다.
  - 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
  - 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
  - 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
  - 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

〈새롭게 추가〉

3. 〈생략〉

203. ~ 205. 〈생략〉

제 3 절 ~ 제 9 절 〈생략〉

제 3 장 ~ 제 10 장 〈생략〉

개 정 사 항

제 1장 〈현행과 동일〉

제 2 장 하역설비

제 1 절 〈현행과 동일〉

제 2 절 검사

201. 〈현행과 동일〉

202. 하역설비의 검사

1. 〈현행과 동일〉

2. 검사시기

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

- 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
- 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
- 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
- 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하다.
  - 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
  - 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
  - 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
  - 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
- (5) (2)호에서 (4)호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검사 연기는 1편 1장 901.의 6항을 따른다.

3. 〈현행과 동일〉

|203. ~ 205. 〈현행과 동일〉

제 3 절 ~ 제 9 절 (현행과 동일)

제 3 장 ~ 제 10 장 〈현행과 동일〉